

1. 개정이유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 적정 정비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7463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등록 시 해당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정비 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기등록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0. 00. ~ 00. 00.) 결과,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국토교통부령 제 호

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항공기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 본문에 따라”를 “등록령 제18조에 따라 항공기의”로, “신청서”를 “별지 제5호서식의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등록령 제18조 각 호의 서류(등록령 제18조제3호의 서류는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 란의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1. 해당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정비 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운항증명을 받은 국내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기 등록에 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 이

후 최초로 항공기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신규등록의 신청) ① <u>법 제7조 본문에 따라</u>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u>신청서에</u>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신규등록의 신청) ① <u>등록령 제18조에 따라 항공기의</u> ----- <u>별지 제5호서식의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서</u>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등록령 제18조제1호·제2호의 서류</u>	2. <u>등록령 제18조 각 호의 서류 (등록령 제18조제3호의 서류는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u>
3. ~ 7.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